안전운항 및 승객 준수사항

제 정 2013. 02. 27 시흥시 고시 제2013-14호

O 개 정 2013. 11. 22 시흥시 고시 제2013-92호

O 개 정 2016. 07. 12 시흥시 고시 제2016-123호

2016. 07.

시 흥 시 장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 적)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5조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운항, 사고방지, 그 밖에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와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, 수질오염의 방지,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제2조 제8호의 낚시어선업자(이하 "낚시어선업자"라 한다)의 안전운항 의무 및 승객이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고시는 법 제2조 제7호의 낚시어선(이하 "낚시어선"이라한다), 낚시어선업자, 선원 및 승객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2장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

제3조(영업시간) ① 낚시어선의 영업시간은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 30분 후까지로 한다.

- ② 단, 레이다, 반사기 등 야간항해 장비를 갖추어 어선검사증서상 야간운항이 가능한 낚시어선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여 허용한다.
- 1. 11월부터 3월까지 05:00 ~ 20:00
- 2. 4월부터 10월까지 04:00 ~ 21:00

4조(운항횟수의 제한) 낚시어선업자는 법 제2조 제6호의 낚시어선업(이하 "영업"이라 한다)을 1일 2회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5조(영업행위 및 영업구역의 제한) ① 낚시어선의 영업은 선상낚시를 원칙으로 한다. 단, 승객이 낚시장소에 안내를 원할시 안내하여 주는 행위도 낚시영업으로 본다.

- ②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은 「영해 및 접속수역법」에 따른 영해선까지로 한다.
- ③ 낚시어선업자는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」,「해사안전법」,「원자력 진흥법」,「항만법」,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,「선박안전조업 규칙」,「어선안전조업규정」등에 의한 제한·통제구역 및 서해특정해역, 시화 호 조력발전소 앞 해역에서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낚시어선업자는 공동영업구역인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관할수역내의 갯바위, 썰물바위, 인공어초지역,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해역에는 낚시 및 승객을 안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6조(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안전운항 의무 등) ①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구명 조끼 착용을 안내하여야 하며,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.

- ② 승선하려는 승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객명부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, 승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증 제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.
- ③ 낚시어선에 주류를 반입하여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약물중독 또는 음주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⑤ 승선정원을 초과하여 승객을 승선시켜서는 아니 된다.

- ⑥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미만의 사람,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 승선에 부적격한 사람을 승선시켜서는 아니 된다.
- ⑦ 인명의 안전에 관한 장비는 출항전 반드시 확인하여 기준 이상으로 갖춘이후 승객을 승선시켜야 한다.
- ⑧ 낚시어선 출항 전 반드시 승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한 후 출항하여야 한다.
- 1. 승객은 안전운항 등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낚시어선 선장의 안내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.
- 2. 낚시장소에서의 낚시행위를 하는 중 기상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낚시어선 선장의 안전대피 안내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.
- ⑨ 승객을 낚시장소에 안내한 때에는 당해 승객과 상호 연락체계를 유지(선주·선원 및 승객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록하여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)하고, 기상악화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승객을 안전하게 대피시켜야 한다.
- ⑩ 승객이 안전대피 조치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양경비안전서, 경찰관서, 군부대, 소방서 등에 대피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.
- ① 사고발생시(승객사망, 실종, 충돌, 좌초 등) 인근 시장·군수 또는 해양경비 안전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, 인명구조 활동 등 사고수습에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.
- ⑫ 해상에 유류, 분뇨, 폐기물 등을 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관계공무원의 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3장 낚시어선의 승객

7조(낚시제한 기준의 준수) 승객은 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낚시제한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. 8조(낚시제한·통제구역의 준수) 승객은 개별법에 따라 제한 및 통제구역 등의 해역에 낚시어선의 안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9조(낚시어선 안전운항을 위한 준수사항) 승객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1. 승객명부의 기재 내용 확인을 위한 낚시어선업자(선장) 및 선원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라야 한다.
- 2. 모든 승객은 승선과 동시에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3. 승선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4. 정신질환자 등 승선에 부적격한 사람의 승선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5. 안전운항을 위한 낚시어선업자(선장) 및 선원의 안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, 안전운항 등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6. 추락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약물복용·음주·가무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.
- 7. 기상악화 시 무리한 운항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, 낚시어선업자(선장) 및 선원의 안전대피 안내에 따라야 한다.

제10조(기타 준수사항) 승객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수산물 안전성 등을 위하여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1. 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낚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및 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미끼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2.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치어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3. 해상에 분뇨, 폐기물, 유류 등의 각종 쓰레기를 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. 제2조(폐지고시)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고시 제2013-92호 「낚시어선 안전운항 및 낚시승객 준수사항 고시」는 폐지한다.

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및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시항의 게시방법

(제19조 관련)

1. 게시판의 제작기준

가. 재질 : 아크릴 등 색이 변하지 않는 재질

나. 색상

1) 글씨 : 검은색

2) 바탕 :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- 흰색, 승객 준수사항 - 노란색

- 다. 게시판 및 글씨의 크기: 게시판의 부착장소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조정하되, 누구나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, 아래(게시방법의 예시)와 같이 직사각형 형태로 제작
- 2. 게시판의 부착장소 : 해당 낚시어선의 갑판실 외벽 등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 (게시방법의 예시)

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

승객 준수사항

- 1. 승객명부의 기재 내용 확인을 위한 낚시어선업자(선장) 및 선원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.
- 2. 모든 승객은 승선과 동시에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합니다.
- 3. 승선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- 4. 정신질환자 등 승선에 부적격한 사람의 승선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- 5. 안전운항을 위한 낚시어선업자(선장) 및 선원의 안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, 안전운항 등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- 6. 추락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약물복용,음주,가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- 7. 기상악화시 무리한 운항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, 낚시어선업자(선장) 및 선원의 안전대피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.